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제5965호로 개정되어 지난 4월 1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규제개혁 의결사항을 토대로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주요 글자로 한 것이다. 당초 건설산업기본법(안)에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부대임찰제도 폐지] 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우리 협회가 그 부당성을 관계기관에 제기한 결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제 도의 폐지를 철회시킴은 물론 우리 협회가 건의한 일반과 전문건설업체의 공동도급 허용(안)이 반영된 성과를 거두었다.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 중 주요 글자

1. 전문건설업(기계설비 포함)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변경(제9조)

현행 : 전문건설업을 면허제로 하며 면허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동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개정 : 전문건설업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등록권자는 시·도지사

※ 명칭만 면허에서 등록으로 변경되었으며 특이 변경사항은 없음

2. 건설업자(기계설비 포함) 면허 갱신제도 폐지(제9조)

현행 : 건설업자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

개정 : 건설업자의 갱신제도 폐지

3. 전문건설업종간 겸업제한 폐지(제12조)

현행 : 전문건설업자는 5개 업종까지 겸업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음(보기 : 기계설비, 가스, 상·



하수도 등 5개 업종)

개정 : 전문건설업 겸업제한을 폐지

4. 건설업자(기계설비 포함)의 변경사항 신고의무 폐지(제15조)

현행 : 건설업자는 상호, 주소, 대표자 등 변경 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정 : 신고 의무 폐지

* 다만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변경사항은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5.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허용(제16조)

현행 : 일반건설업자가 보유 가능한 전문건설 업종(철강재, 준설, 삭도, 가스, 시설물유지관리)에 한하여 일반·전문간의 공동도급 허용

개정 : 일반이 전체공사를 관리하는 조건인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으로 일반과 모든 전문건설업종간의 공동도급 허용

* 일반건설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행위 가능

6.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확대 조정(제16조)

현행 : 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개정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없는 공사에 2이상의 전문공사 복합된 건설공사가 제외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해석에 발주자의 유통성 발생으로 업 역 확대 가능

7. 건설업 양도·합병 인가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제16조)

현행 : 건설업 양도·합병시 면허권자에게 인가를 득하여야 함

개정 : 건설업 양도·합병시 시·도지사에게 신고

8. 시공능력공시제도를 의무제도에서 임의제도로

변경(제23조)

현행 : 건설업 면허소지자는 시공능력공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

개정 :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 시공능력공시가 임의화되었으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자는 시공능력을 협회에서 평가받아 공시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임

9.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 범위 확대(제29조)

현행 : 전문건설업자가 수주한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시공참여자와 도급, 위탁 등의 계약행위를 할 수 있음

개정 : 전문건설업자가 도급(원도급,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하여 시공참여자와 계약행위를 할 수 있음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도급, 위탁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에 전문건설업자가 수주한 원도급공사도 포함

10.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규정 폐지(제41조)

현행 : 주거용건축물은 200평 이상, 기타 건축물은 150평 이상인 구조물은 자가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업자만이 시공 가능

개정 : 폐지

* 자가공사의 경우로서 시공자가 건설업자 아닌 경우에도 동 공사를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줄 경우에는 해당업자는 처벌 대상임.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제88조)

현행 :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대하여 압류 금지

개정 :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당해공사의 노임에 대하여 압류 금지

* 시행일: 1999. 4. 15.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p> <p>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p>
<p>〈신설〉</p>	<p>제9조의 2(등록증의 교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끊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p>
<p>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전문건설업의 등록) ① 전문건설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p>	<p>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p> <p>등록기준</p>
<p>〈삭제〉</p>	

現 行	改 正 案
<p>업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9조제5항의 규정은 전문건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2조(건설업자의 견업제한)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p> <p>②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면허받거나 등록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p> <p>제13조(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2조(건설업자의 견업제한) ①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할 수 없다</p> <p>〈삭제〉</p> <p>③ 제1항 등록을 할 수 없다</p> <p>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자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p>3. 제83조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p>	<p>3. 제83조제1호 등록이 말소(증전)되는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를 포함한다) 된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p>
<p>4. 생략</p> <p>②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면허</p>	<p>4. (현행과 같음)</p> <p>②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p>

現 行	改 正 案
<p>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수의 계속공사) ①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자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 또는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p> <p>④ 생략</p> <p>제15조(건설업자 등의 신고의무등)</p> <p>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2개 업종이상의 건설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각각 다른 때에는 전체 업종에 대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받은 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에</p>	<p>등록</p> <p>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p> <p>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영업정지처분</p> <p>제13조제2항</p> <p>등록</p> <p>② 영업정지처분</p> <p>③ 등록이 실효되거나</p> <p>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現 行	改 正 案
관한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내용중 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삭 제〉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도급받는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다. ②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건설업자는 2 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도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 · · · · ③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3. 등록을
④ 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단서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 건설교통부령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인가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신고

現 行	改 正 案
<p>③ (생략)</p> <p><u>제18조(건설업양도등의 인가절차)</u></p> <p>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③ 건설업의 양도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u>건설업양도의 인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u></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20조9(건설업양도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기를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p> <p>2 ~ 4 (생략)</p> <p>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u>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u>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제21조(건설업면허등의 대여금지)</p> <p>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면허증·건설업면허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p> <p>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8조(건설업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 <u>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u></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u>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u></p> <p>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등록말소</u></p> <p>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p> <p><u>건설업등록증</u></p> <p>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고시)</p> <p>① <u>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u></p>

現 行	改 正 案
<u>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	<u>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 <u><삭제></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등에 따라 평가한다.</u>	<u>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③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자본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④</u> <u>· · · · · 평가방법 및 공시절차</u>
<u>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u>공시시기·공시방법·공시절차</u>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u>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u> <u>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경영실태·공사수행상황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u>
<u>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건설관련 사업자단체·공제조합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 및 판매상황등에 관한 차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u>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u>제25조(수급인의 자격제한) ①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u>	<u>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야 한다.</u>
<u>② (생략)</u>	<u>② (현행과 같음)</u>
<u>〈신설〉</u>	<u>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現 行	改 正 案
<p>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p> <p>③ (생략)</p> <p>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p>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p> <p>제32조(하수급인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p>
<p>제32조(하수급인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p>	<p>월간 설비건설 '99. 4월호 51</p>

現 行	改 正 案
<p><u>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p> <p><u>제39조(시공관리대장의 작성 등)</u></p> <p>①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이들이 각각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수급인</p> <p>2. 하수급인</p> <p>3.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금·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이하 "시공참여자"라 한다)</p> <p>③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약정내용을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건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p> <p>⑤ 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p> <p>〈삭제〉</p>	<p><u>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p> <p>③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p> <p>④ 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p>

現 行	改 正 案
<p>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⑦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조직도를 작성하여 공시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41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p> <p>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p> <p>2.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p> <p>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42조(건설기술자의 겹침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43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p> <p>②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p> <p>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p> <p>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p> <p>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p>

現 行	改 正 案
<p>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p> <p>제52조(건의와 자문등) ① 각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각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p> <p>제53조(민법규정의 준용) 각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시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각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각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⑤ 각 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각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가 200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각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p> <p>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각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12. (생략)</p>	<p>제52조(건의와 자문등) ① 협회</p> <p>② 협회</p> <p>제53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p> <p>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는 건설업자 상호간의</p> <p>공제조합을</p> <p>② 공제조합</p> <p>③ 공제조합</p> <p>④ 공제조합</p> <p>⑤ 공제조합</p> <p>제55조(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공제조합</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제조합</p> <p>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p> <p>1. ~ 12. (현행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p>② 각 공제조합은 각 공제조합 상호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57조(공제조합) ① 각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각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p> <p>① 각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각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때</p> <p>4.·5. (생략)</p> <p>② 각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자체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받아야 하며, 동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p> <p>③ 조합원의 지분은 각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p> <p>④ 각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자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p>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등) 각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공사의 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보증 또는 응자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62조(대리인의 선임) 각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② 공제조합…공제조합</p> <p>제57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p> <p>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p> <p>① 공제조합</p> <p>1.·2. (현행과 같음)</p> <p>3.</p> <p>4.·5. (현행과 같음)</p> <p>② 공제조합</p> <p>③</p> <p>④ 공제조합</p> <p>⑤</p> <p>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등) 공제조합</p> <p>제62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p>

現 行	改 正 案
제63조(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 각 공제조합은 결산 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생략)	제63조(책임준비금등의 적립) ① <u>공제조합</u> ②(현행과 같음)
제64조(시공상황조사 등) ① 각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전술할 수 있다. ② 각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에 관한 업무를 <u>각 협회</u> 또는 건설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시공상황조사 등) ① <u>공제조합</u> ② <u>공제조합</u> · <u>협회</u>
제65조(보고서의 제출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	제65조(보고서의 제출등) ① · <u>공제조합</u> · ②(현행과 같음)
제66조(보증금징수의 제한) 보증채권자는 각 <u>공제조합</u> 이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의 약정에 불구하고 그 보증서로서 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에 갈음하여야 하며, 그 조합원으로부터 따로 보증금 기타 명목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보증금징수의 제한) · <u>공제조합</u>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각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각 <u>공제조합</u> 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u>공제조합</u> ② · <u>공제조합</u>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각 <u>공제조합</u>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u>공제조합</u>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u>특별시장·광역시장</u> 또는 도지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現 行	改 正 案
<p>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여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생략)</p> <p>제70조(위원회는 구성) ①(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1. <u>교육법</u>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2. ·3. (생략)</p> <p>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p>	<p>시·도지사</p> <p>②(현행과 같음)</p> <p>제70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p> <p>1. <u>고등교육법</u></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p>
<p>④·⑤(생략)</p> <p>제7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또는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78조(조정의 효력) ①·③(생략)</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p>제81조(시정명령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2. ~ 6. (생략)</p> <p>7.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지 아니하거나 원공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p> <p>8.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p> <p>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p>	<p>특별시·광역시</p> <p>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78조(조정의 효력)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p> <p>제81조(시정명령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p> <p>〈삭 제〉</p> <p>2.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p> <p>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p>

現 行	改 正 案
<p>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 때</p> <p>4. ~ 6. (생략)</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 하여야 할 전문공사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2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다만,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한다.</p> <p>3·4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83조(건설업의 면허취소등)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및 제 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p> <p>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때</p> <p>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p> <p>4.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5. (생략)</p>	<p>.....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p> <p>1. (현행과 같음)</p> <p>2. 등록을</p> <p>.....</p> <p>.....</p> <p>.....</p> <p>3. 제29조제5항 통보</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p> <p>3·4 (현행과 같음)</p> <p>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하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1. 등록을 한 때</p> <p>2. 등록기준</p> <p>〈삭제〉</p> <p>〈삭제〉</p> <p>5. (현행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p>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7. (생략)</p> <p>8.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p> <p>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p> <p>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p> <p>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②(생략)</p> <p>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p> <p>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p> <p>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p> <p>2·3. (생략)</p> <p>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p> <p>② 전문건설업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건</p>	<p>〈삭제〉</p> <p>7. (현행과 같음)</p> <p>8. 등록을</p> <p>.</p> <p>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때 (하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10.</p> <p>등록말소</p> <p>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p> <p>.</p> <p>건설교통부</p> <p>장관 또는 시·도지사</p> <p>.</p> <p>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p> <p>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p> <p>.</p> <p>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p> <p>①</p> <p>. 당해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이의 누설금지)</p> <p>.</p> <p>1. 등록</p> <p>.</p> <p>2·3. (현행과 같음)</p> <p>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現 行	改 正 案
<p>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생략)</p> <p>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빙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p> <p>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p> <p>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p> <p>4. (생략)</p> <p>5.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p> <p>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p> <p>7. (생략)</p> <p>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p> <p>2. (생략)</p> <p>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p> <p>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p> <p>2·3 (생략)</p> <p>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p> <p>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p> <p>6.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p> <p>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의 금지를 위반한 자 및 다른 건설사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당해 건설기술자가 동조에 위반하게 한 건설업자</p> <p>8. (생략)</p> <p>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p> <p>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p> <p>2·3. (생략)</p> <p>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p> <p>①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p>	<p>②(현행과 같음)</p> <p>제86조(벌칙)</p> <p>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삭제〉</p> <p>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p> <p>4. (현행과 같음)</p> <p>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p> <p>〈삭제〉</p> <p>7. (현행과 같음)</p> <p>제97조(벌칙)</p> <p>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으로 허위로 제출한 자</p> <p>2. (현행과 같음)</p> <p>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p> <p>〈삭제〉</p> <p>2·3 (현행과 같음)</p> <p>4.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삭제〉</p> <p>6. 〈삭제〉</p> <p>7. 〈삭제〉</p> <p>8. (현행과 같음)</p> <p>제100조(과태료)</p> <p>〈삭제〉</p> <p>2·3. (현행과 같음)</p> <p>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p> <p>①</p>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설업자 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과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벌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제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